

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

檢 討 報 告 書

【이미자 의원 발의】



2021. 8. 3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78호로 2021년 8월 19일 이미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라. 주거복지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
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「주거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 (2021. 8. 10. ~ 8. 17. / 8일 간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건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」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주거기본법」 및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복지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주거약자 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급권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
2. “수급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~ 11. (생략)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계급여
2. 주거급여
3. 의료급여
4. 교육급여
5. 해산급여(解産給與)
6. 장제급여(葬祭給與)
7. 자활급여

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(이하 “차상위자”라 한다)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

긴급복지지원법

제5조(긴급지원대상자)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(이하 “긴급지원대상자”라 한다)으로 한다.

3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거약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65세 이상인 사람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
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2. “주거약자용 주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.
 - 가.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
 - 나.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
 - 다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
 - 라.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
2.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3.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,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

제5조(주거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「주거기본법」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
2.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
3.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 주거기본법

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소득수준·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2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층·지원대상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)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

- 층(이하 “주거지원필요계층” 이라 한다)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
3.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,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
 4.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
 5.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 6. 주거환경 정비,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
 7.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
 8. 저출산·고령화,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
 9.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